

동반성장론 업무협약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학교급식재료 및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대금 지급을 통한 협력기업 금융지원 用)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하고, “은행”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는 상호 협력하여 학교급식재료 또는 학교급식식재료를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납품기업 또는 공급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한 납품대금 또는 공급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동반성장론」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에 대하여 「동반성장론」을 지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동반성장론(일반)”이라 함은 구매기업(4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과 1차협력기업간의 경상적인 상거래에 수반하는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채무를 공사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 함에 따라 공사가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1차협력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 ② “동반성장론(협력)”이라 함은 1차협력기업과 동반협력기업 또는 동반협력기업간 경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동반협력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 ③ “동반성장론”이라 함은 동반성장론(일반)과 동반성장론(협력)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 ④ “구매기업”이라 함은 협력기업으로부터 급식재료 또는 급식식재료(이하 “물품 등”이라 합니다)를 구매하는 학교로서, 공사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 한 구매대금 지급채무의 채무자인 기업을 말합니다.
- ⑤ “공사”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채무 일체를 구매기업으로부터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고, 외상매출채권(6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의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⑥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 거래를 하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또는 그 채권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공사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 함으로써 공사가 제3채무자로서 변제하게 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 ⑦ “1차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공사가 면책적인 방법으로 채무인수 함으로써 외상매출채권의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공사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일반)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⑧ “동반협력기업”이라 함은 1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차협력기업, 2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3차협력기업, 3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4차협력기업 중 상위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협력)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⑨ “협력기업”이라 함은 1차협력기업과 동반협력기업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 ⑩ “상위기업”이라 함은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차협력기업에게는 공사를, 2차협력기업에게는 1차협력기업을, 3차협력기업에게는 2차협력기업을, 4차협력기업에게는 3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
- ⑪ “하위기업”이라 함은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공사에게는 1차협력기업을, 1차협력기업에게는 2차협력기업을, 2차협력기업에게는 3차협력기업을, 3차협력기업에게는 4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
- ⑫ 상생매출채권”이라 함은 공사가 1차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1차협력기업부터 3차협력기업이 받은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 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이라 함은 은행과 협력기업간의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공사가 만기일이 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⑭ “MP(Market Place)”라 함은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기업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을 중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협력기업은 공사 또는 상위 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공사는 MP사이트에서 발행채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업무의 방법)

- ① 이 협약에 의한 거래는 기업 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 거래를 하고, 공사가 구매대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 함으로써, 1차협력기업이 공사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동반협력기업이 상위기업에 대하여 상생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1차협력기업은 공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의 동반성장론(일반) 대출을 받거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③ 동반협력기업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채권의 만기일 전에 상환청구권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의 동반성장론(협력) 대출을 받거나,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생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이 실행된 경우에, 건별 대출일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공사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공사를 채무자로 하는 당일만기 동반성장론(이하 "당일만기대출"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을 상환하고, 공사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공사 명의를 당일만기대출을 상환처리 합니다.
- ⑤ 공사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으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대금에 대하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를 에스프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제4조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발행, 관리)

- ① (정보교환)
양 당사자는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상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니다.
- ②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은행이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1차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 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공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공사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제 4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 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③ (장래채권이 매 건 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
 1. 공사가 전 항에 따라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사실을 통지 받은 외상매출채권이 구매기업과 1차협력기업간의 실제거래에 따라 매 건 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공사는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은행에게 통보합니다. 공사는 은행에 대하여 공사가 이와 같이 통보하는 외상매출채권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2.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 건 별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통보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 요인에 의하여 공사가 하지 않은 통보가 있거나 통보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어느 당사자나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고, 공사의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외상매출채권명세 통보)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명세 통보를 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하기 전에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협력기업의 제2항에 의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이익없는 승낙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채권 통보를 보류하거나 금전채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1차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합니다)
 4. 1차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1차협력기업이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
 5. 전산조작오류 등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6. 기타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
공사는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1차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 1차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압류·가압류하였다거나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5조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 ① 공사가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사가 외상매출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 고
			공사의 본지사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 ②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동반성장론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 ④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공사로 부터 입금 받은 채권대금을 그 만기일에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 ⑤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그 외상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공사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⑥ 만기일에 공사가 제1항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⑦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3항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 ⑧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 상환 및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결제 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반성장론(협력)대출의 중도상환에 따르는 환출이자는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됩니다.
- ⑨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외상매출채권 대금 중 제3조5항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협력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며, 공사는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공사가 제4조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통보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공사는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공사로 부터 통보를 받고 일부라도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실행한 경우나 상생매출채권이 발행 된 경우에는 공사는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7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① 은행은 공사의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동반성장론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거러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에 “V” 표시 및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금	원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금	원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가산금리()%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7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로 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변 제 방 법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결제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해 대출 취급된 외상매출채권 및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집니다.
- ③ 공사로 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 대출을 취급한 경우,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공사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
- ④ 공사 명의로 실행된 당일만기대출을 당일 중 상환 시 이자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당일 중 상환되지 않은 당일만기대출에 대하여는 당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공사로 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실행한 이후에는 공사는 1차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압류·가압류 통지를 받거나,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 (거래조건)

① 1차협력기업의 대출취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 가능일	공사가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한 날 (외상매출채권 발행일) + () 은행영업일부
② 협약서의 유효기간	_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 (※ 최장 1년 이내)

제9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 ① 은행은 협력기업별로 약정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협력기업의 대출신청을 받기로 하며, 공사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및 동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취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협력기업은 이 협약에 의하여 은행에게 양도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이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제출(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협력기업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은행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협력기업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③ 1차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은 제8조1항에서 정한 “대출취급가능일”부터 대출을 취급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0조 (대출의 취급 및 제한)

- ① 은행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사로 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취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공사 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협력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 상의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거나 신용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은행의 내규에 의해 여신 취급이 금지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의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은행 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한도 감액·정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공사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7조에서 정한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 발행한도,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및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기업의 대출취급 금지, 외상매출채권거래, 상생매출채권거래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2. 공사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당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11조의 2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정보제공의 동의)

- 공사는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MP 및 협력기업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① MP에게는 공사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채권발행내역, 결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② 협력기업에게는 공사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채권발행정보, 결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13조 (협약서 효력)

-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제8조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